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58
----------	-------

발의연월일 : 2025. 12. 19.

발의자 : 최혁진 · 박해철 · 박정

김문수 · 박지원 · 권칠승

김정호 · 박홍배 · 송옥주

정혜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국회는 지난 10월 26일 본회의 의결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음.
‘근로자’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용어로, 산업화 시대의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어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 는 가치중립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 현대사회에서 노동은 사업주의 통제에 의하여 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인간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핵심적 사회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우리의 제도와 용어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근로’라는 말을 ‘노동’으로 대체하

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2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재해근로자”를 각각 “산업재해노동자”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근로복지공단”을 각각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5호의2 · 제5호의5 및 제6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6조제3항제3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한다.

제34조 중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의 근로”를 “노동자의 노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상용근로자”를 “상용노동자”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노동자가 노동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2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3조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본문 ·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55조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4조제1항제2호 · 제3호 및 제6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 ·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8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9조 제1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1조 제1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 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4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5조의2 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6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78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79조 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0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을 “「노동기준법」”으로 한다.

제8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

를 “노동자”로 한다.

제87조제1항 단서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89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2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3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4제1항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5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진폐근로자보호법”을 “진폐노동자보호법”으로 한다.

제91조의6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진폐근로자보호법”을 “진폐노동자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을 “노동자가 진폐노동자보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8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진폐근로자”를 “진폐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9제1항 중 “진폐근로자”를 각각 “진폐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10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11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12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16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1조의17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일용근로자”를 “일용노동자”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

제92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한다.

제96조제1항제5호 중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한다.

제105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07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단체”를 각각 “노동자단체”로 한다.

제111조의2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14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18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20조제1항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근로시키기”를 “노동시키기”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3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3조의2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4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26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27조제3항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129조제2항제1호 중 “근로복지공단”을 “노동복지공단”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로복지공단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은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근로복지공단의 명의는 노동복지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복지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④ 이 법 시행전에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복지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노동복지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u>근로자</u> 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u>재해근로자</u> 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u>근로자</u> 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u>근로자</u>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노동자</u> ----- ----- <u>재해 노동자</u> ----- ----- ----- <u>노동자</u> ----- ----- <u>노동자</u> ----- -----.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5조(정의) ----- -----.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u>근로자의</u>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1. ----- ----- <u>노동자</u> ----- ---.
2. “ <u>근로자</u>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이란 각각 「 <u>근로기준법</u> 」에 따른 “ <u>근로자</u> ”·“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 <u>근로기준법</u> 」에 따라 “임	2. -- <u>노동자</u> ----- ----- -- 「 <u>노동기준법</u> 」 ----- <u>노동자</u> ----- ----- ----- 「 <u>노동기준법</u> 」 -----

<p>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p>	----- ----- ----- ----- ----- -----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p>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u>근로자</u>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제6조(적용 범위) ----- <u>노동자</u> ----- ----- -----. ----- ----- ----- ----- --.
<p>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u>근로자</u>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그 수는 각각 같은 수로 한다.</p>	제8조(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노동자</u>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p>제9조의2(<u>산업재해근로자의 날</u>) ①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u>산업재해근로</u></p>	제9조의2(<u>산업재해노동자의 날</u>) ① ----- ----- <u>산업재해노동</u>

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 (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생략)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

상용 노동자
노동
자
노동자

⑧ (현행과 같음)
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노동자

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
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
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요양을 담당할 의료기관(이하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② (생 략)

③ 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제1항제3호의 경우만 해당된다)하거나 12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진료할 수 없도록 하는 진료제한 조치 또는 개선명령(이하 “진료제한등의 조치”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 6. (생략)

④ ~ ⑦ (생략)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

----- 노동자 -----
----- 노동자 -----
----- . -----

제43조(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① -----
----- 노동자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44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

<p>대한 임금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54조(저소득 <u>근로자의</u> 휴업급여) ①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u>근로자</u>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그 <u>근로자의</u>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p> <p>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 지급액이 최저임금액 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u>근로자의</u>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p> <p>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u>근로자가</u>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4조(저소득 <u>노동자의</u> 휴업급여) ① -----</p> <p>-----</p> <p>-----</p> <p>----- <u>노동자</u></p> <p>-----</p> <p>-----</p> <p>-----.</p> <p>----- <u>노동자</u></p> <p>-----</p> <p>-----</p> <p>-----</p> <p>-----</p> <p>-----</p> <p>-----</p> <p>-----.</p> <p>② -----</p> <p>-----</p> <p>-----</p> <p>-----</p> <p>----- <u>노동자</u></p> <p>-----</p> <p>-----.</p> <p>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p> <p>----- <u>노동자</u></p> <p>-----</p>
---	--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다.

④ 장해보상연금은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그 연금의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제3항 단서에 따른 근로자에게는 그 연금의 최초 1년분부터 4년분까지)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의 비율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공제할 수 있다.

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수급권이 제58조에 따라 소멸
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액
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
금으로 나눈 일수(日數)의 합계
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일
시금의 일수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권 소멸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
정한 금액을 유족 또는 그 근
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노동자

(4) 노동자

제62조(유족급여) ① -----

<p><u>근로자가</u>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p>	<p><u>노동자</u>----- -----.</p>
<p>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u>근로자가</u>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p>	<p>② ----- ----- ----- ---<u>노동자</u>----- ----- -----.</p>
<p>③ ~ ⑤ (생 략)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u>근로자가</u> 사망할 당시 그 <u>근로자</u>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u>근로자가</u>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 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u>근로자</u>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p>	<p>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 ----- ----- ----- -----<u>노동자</u>----- -----<u>노동자</u>----- -----<u>노동</u> ----- ----- ----- ----- ----- ----- -----<u>노동자</u>----- ----- -----</p>

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 제자매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u>근로자가</u> 유 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 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④ ----- ----- <u>노동자</u> ----- ----- -----.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 여를 받는 <u>근로자가</u> 요양을 시 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 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 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u>근로자</u> 에게 지급한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 ----- <u>노동자</u> ----- ----- ----- ----- ----- <u>노</u> <u>동자</u>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저소득 <u>근로자의</u> 상병보 상연금) ① 제66조에 따라 상 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그 <u>근</u> <u>로자의</u>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액 에 70분의 100을 곱한 금액보 다 적을 때에는 최저임금액의 7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u>근로자의</u> 평균임금으로 보 아 산정한다.	제67조(저소득 <u>노동자의</u> 상병보 상연금) ① ----- ----- <u>노동자</u> ----- ----- ----- ----- ----- <u>노</u> <u>동자</u> ----- ----- ----- ----- --- <u>노동자</u> ----- -----.

② 제1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별표 4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별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별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된 이후에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에서 제1항 후단에 따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장해보상연금 지급액을 뺀 금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재요양하는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요양 중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이 높아지

② 노동자

③ 노동자

④ 노동자

면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요양을 시작한 때부터 2년이 지난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5) (생략)	(5) (현행과 같음)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u>근로자</u> 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제71조(장례비) ① ----- 노동자-----
(2) (생략)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자</u> 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	----- 노동자-----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④ (생략)

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사람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 또는 1일당 진폐보상연금액(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한 진폐보상연금액을 365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과 1일당 직업훈련수당을 합한 금액이 그 근로자의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 중 직업훈련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공
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
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
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빨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직업훈련수당)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작

[View Details](#) | [Edit](#) | [Delete](#)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직장복귀 지원) ① ---

노동

10

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직장복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

--- 노동자 ---

② (현행과 같음)

(3) 노동자

노동자

노동자

(4) -----
- 노동자 -----

<p>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⑤ · ⑥ (생략)</p> <p>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u>근로자</u>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 치유되기 전에 출국하기 위하여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국하기 위하여 요양을 중단하는 날 이후에 청구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급여를 한꺼번에 지급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보험급여를 미리 지급하는 기간에 따른 이자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u>근로자가</u>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사</p>	----- ----- ----- ----- -----.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76조(보험급여의 일시지급) ① ----- <u>노동자</u>----- ----- -----. <p>② ----- -----. --- <u>노동자</u> --- -----</p> </p>
--	--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제62조의 유족급여 또는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 ③ (생략)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set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letter formation.

② (현행과 같음)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_____

② · ③ (현행과 같음)

(4) 노동자
----- 「노동기준법」 -----

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2)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 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u>진폐근로자</u> 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 -- <u>진폐노동자</u> -- ----- ----- -----. -----.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u>근로자</u> 에게 알려야 한다.	④ ----- ----- ----- <u>노 동자</u> -- -----.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8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된 <u>진폐근로자</u> 에 대하여는 제40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재 보험 의료기관 중 <u>진폐근로자</u> 의 요양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이하 “진폐요양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제91조의9(진폐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 ① ----- ----- ----- - <u>진폐노동자</u> -- ----- ----- <u>진폐노동자</u> -- ----- ----- -----.

3. 그 밖에 <u>근로자의 복지 증진</u> 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 사업	3. ----- <u>노동자</u> ----- ----- --
(2)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 또는 <u>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u> 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 <u>재해노동자</u> ----- ----- ----- ----- ----- ----- ----- --.
③ · ④ (생 략)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96조(기금의 용도) ① ----- -----.
1. ~ 4. (생 략) 5. <u>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u> 6. ~ 8. (생 략) ② · ③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재해노동자</u> ----- 6. ~ 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① ~ ③ (생 략)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 ·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④ 공단은 심사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p>4. 소속 직원에게 사건에 관계가 있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 <u>근로자</u>, 그 밖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는 것</p> <p>5. 심사 청구와 관계가 있는 <u>근로자</u>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 ·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의사등”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게 하는 것</p> <p>⑤ (생 략)</p> <p>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재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5분의 2에 해당하는 위원은 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근로자</u>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u>근로자</u> 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근로자</u> 단체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이 위촉하려는 전</p>	<p>4. ----- ----- -----<u>노동자</u> ----- ----- ----- ----- 5. -----<u>노동자</u> ----- ----- ----- ----- ----- ⑤ (현행과 같음) <p>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노동자</u> ----- ----- -----. -----<u>노동자</u> ----- ----- -----. ④ -----<u>노동자</u> -----<u>단체</u> ----- -----</p> </p>
---	---

체 위원 수의 5분의 1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u>근로자단체</u> 와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위원 수를 전체 위원 수의 5분의 2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 ----- <u>노동자단체</u> ----- ----- -----.
(5) ~ (10) (생략)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u>근로자가</u>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u>근로자</u> 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u>근로자</u> 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 (10)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u>노동자</u> <u>노동자</u> <u>노동자</u> ----- -----.
제114조(보고 등) 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u>근로자</u> 및 보험료징수법 제33조에 따른 보험사무대행기관(이하 “보험사무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보고 등) ① ----- ----- ----- <u>노동자</u> ----- ----- ----- ----- ----- ----- -----.
(2) ~ (4) (생략)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	(2) ~ (4) (현행과 같음) 제118조(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 ⑤ (생 략)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u>근로시키기</u> 위하여 파견하는 사람(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u>근로자</u> 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u>노동시키기</u> <u>노동자</u> .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u>근로자</u> 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u>노동자</u> .
③ · ④ (생 략)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3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p>② (생 략)</p> <p>제127조(벌칙) ① · ② (생 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2. (생 략)</p> <p>3.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u>근로자를</u> 해고하거나 그 밖에 <u>근로자에게</u>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p> <p>④ (생 략)</p> <p>제129조(과태료) ① (생 략)</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제34조를 위반하여 <u>근로복지공단</u>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p> <p>2. (생 략)</p> <p>③ · ④ (생 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7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1. · 2. (현행과 같음)</p> <p>3. ----- <u>노동자</u>----- <u>노동자</u>----- -----</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u>노동복지</u>----- <u>공단</u>----- -----</p> <p>2. (현행과 같음)</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	--